

간호학과 예산심의 내규

제정 : 2012.09.01
개정 : 2014.12.01
개정 : 2015.03.01
개정 : 2019.07.10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의 학과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편성,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2조(운영 조직) 학과는 예산 편성 및 심의 집행과 관련된 운영 및 의견 수렴은 학과 교수회에서 한다.

제3조(업무) ① 학과는 학과의 등록금에 비례하여 학과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② 학과는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다.

③ 학과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하며 확보한 예산의 80% 이상을 집행하도록 노력한다.

제4조(예산편성시기)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. 회계연도 시작 전 해의 12월 중 예산을 편성한다.

제5조(예산편성 및 집행) ① 학과의 예산에는 실험실습비, 교육관련경비, 학생행사 경비, 교수연수 및 자기개발경비 등을 포함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과의 실험실습비는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적정수준 이상을 확보하며 80% 이상을 집행한다.

③ 교수 연구비 및 역량개발 지원비는 교수 1인당 100만원 이상으로 편성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3.10.16.>

제6조 (사용범위) 학과 예산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험실습비

가. 실습실실습운영비

- 나. 임상실습운영비
- 다. 실습교과운영비
- 라. 기타 실습관련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비 <개정 2019.07.10.>
- 2. 교육관련경비
 - 가. 학과적응 프로그램 지원비
 - 나. 직업적응 프로그램 지원비
 - 다. 학생기초학력 향상 지원비
 - 라. 면허 및 자격취득 지원비
 - 마. 교육관련 학생연수 및 견학 지원비
 - 바. 학생봉사활동 지원비
- 3. 학생 행사 경비
 - 가. 나이팅게일 선서식
 - 나. 졸업생과의 교류 행사
 - 다. 학술제
- 4. 교수 연구비 및 자기개발 지원비
 - 가. 연구비 지원
 - 나. 학회 참석 및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
- 5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비

제7조(예산 심의 및 집행 절차) ① 학과는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한다.

② 학과는 예산확보와 편성을 위하여 학과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③ 학과는 학과예산 편성에 대한 협조문을 미래전략처로 발송한다. <개정 2019.07. 10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④ 학과는 예산 집행 시기에 확보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에 해당 행정부서로 협조문을 발송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기타)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